

## □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요

- (기능)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, 지정·지정해제, 계획변경 등에 대한 심의·의결

\* 법적 근거 : 「지역특구법」 제12조(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)

- (구성) 25명 \* 위원장(중기부 장관), 당연직(14개 부처 차관급) 14명, 민간위원 10명

▷ (정부위원) 국토부(부위원장) 기재부, 교육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림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해수부, 식약처, 공정위 차관급 (14명)

▷ (민간위원)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(10명)

※ (심의·의결)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
## □ 제57차 위원회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11.28(목) 14:30~16:30 / 중기부 회의실(605호)

- (참석대상) 지역특구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

- (안전)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, 계획변경, 지정해제 등 12건

▷ 【심의】 ①~③ 신규지정 3건(서울 서초, 대전 서구●유성구, 경기 시흥)  
④~⑤ 계획변경 2건(전북 임실, 충남 홍성)  
⑥~⑨ 지정해제 4건(서울 도봉, 인천 강화, 강원 화천, 대전 동구)

▷ 【보고】 ⑩~⑫ '24년도 특구 관련, ▲운영성과평가 결과, ▲신규 규제특례 수요 조사 결과, ▲운영상황조사 결과

- 향후 일정 : 지역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 관보 게재(12월)